

금강대학교대학원 선수과목 이수지침(폐지안)

제 정 : 2014. 7. 1
폐 지 : 2019. 11. 2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학칙 시행세칙 제12조에 따라 전공별 선수과목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전공과정 분과위원회

제2조(전공과정 분과위원회 구성) 선수과목 이수 및 지정 등 전공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공과정 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전공 교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과장이 된다.

제3조(기능) 전공과정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선수과목 지정 및 이수에 관한 사항
2. 기타 전공과정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전공과정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5조(기타) 기타 전공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공과정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선수과목 이수 및 지정

제6조(선수과목 이수대상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규과목 이외에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① 학부의 전공이 본 학과의 전공심화과정과 다른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한 자
- ② 전문(특수)대학원 출신으로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한 자
- ③ 석사학위 과정의 전공이 본 학과의 전공심화과정과 다른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한 자
- ④ 유사전공학과 입학자로서 해당 지도교수와 학과장에 의해 선수과목 이수를 요구

한 자

⑤ 편입생으로서 전적 대학원의 전공과 상이한 자

제7조(이수학점) ① 각 학위과정의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학과(전공심화과정)에서 지정한 선수과목을 18학점(6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선수과목의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 가산되지 않으며 성적은 P(Pass) 또는 불합격(N)으로 표기한다.

제8조(선수과목 학점인정) ① 비동일 계통의 입학자 중 선수과목으로 기 취득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와 함께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작성한 학점인정서를 소정 기간내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학점인정은 선수과목 학점으로만 인정되며 성적은 P(Pass)또는 불합격(N)으로 표기한다

제9조(선수과목) 각 학위과정의 선수과목은 별도로 지정하여 공지한다.

제10조(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절차) 재학 중 다른 대학원에서 선수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추천을 거쳐 수강신청 기간 내에 별도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성적표를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개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선수과목 이수 불이행) 비동일 계통의 학위과정 입학자가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부 칙

1. 이 제정 지침은 2014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지침은 2019년 11월 25일부로 폐지한다.

